

인천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3151(본소), 3168(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본소), 건물철거 등(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3151(본소), 3168(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_2003가단66461" class="popup_view">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6646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

인천 중구

송달장소 인천 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나완◆, 박소▲, 김영▼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망 김○○의 소송수계인

김○○

인천 부평구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66461(본소), 2004가단2723(반소)

판결인천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3가단66461(본소), 2004가단2723(반소) 추가판결

변론종결 2006. 5. 18.

판결선고 2006. 7.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금원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및 선정자 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선정자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반소에 관하여 제3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는 1,527,575원과 2004. 5. 4.부터 인천 부평구 ○○동 ***-* 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4, 15, 16,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의 인도시까지 월 75,3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김○○는 1,527,575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동 ***-* 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4, 15, 16,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 중 99.4/225 지분에 관하여 1987. 9.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선정자 김○○에 대한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선정자 김○○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와 선정자 김○○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인천 부평구 ○○동 ***-* 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1, 9, 13, 10, 7, 8,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부분 지상에 건립된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페니쉬기와지붕 주택 및 세멘블럭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합계 31㎡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12, 14, 15, 16,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를 인도하며, 2,736,500원과 2004. 5. 4.부터 위 토지의 인도시까지 월 13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김○○는 원고에게 2,736,5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 중 금원지급 청구부분을 감축하고, 선정자 김○○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위 선정자 김○○에 대한 확장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동 ***-* 대 1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4, 15, 16,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에 관하여 1987. 9.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선정자 김○○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선정자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소유 토지의 현황

(1) 원고는 1980. 5. 19. 분할 전 인천 부평구 ○○동 ***-* 대 225㎡(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편의상 '인천 부평구 ○○동'의 표시를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를 매수하여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다가, 1984. 11. 14. 위 ***-* 대 225㎡ 중 125.6/225 지분을 이 ○○에게 매도하고 그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 2. 12. 위 ***-* 대 225㎡는 ***-* 대 139㎡와 ***-*** 대 86㎡로 분할되어 원고와 이○○는 위 2필지 토지를 각 99.4/225 지분, 125.6/225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위 ***-*** 대 86㎡는 분할 당일 ***-* 대 126㎡로 환지되었고, 원고와 이○○는 1988. 2. 16. ***-* 대 139㎡는 원고가 단독소유하고 ***-***은 이○○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합의하여, 원고는 1988. 2. 19. 위 ***-* 대 13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소유 토지 및 주택의 현황

(1) 피고의 아버지인 망 김○○는 1967. 9. 5.경 신○○로부터 원고소유 토지에 인접한 분할 전 ***-* 대 102평 7합(339.505㎡)과 그 지상의 건물 2채(목조 와즙 평가건주택 31.41㎡와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40㎡, 이하, 위 건물 2채를 합하여 '피고소유 주택'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여, 1967. 9. 6. 피고소유 주택에 관하여, 1967. 9. 8. 위 ***-* 대 102평 7합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분할 전 ***-* 대 102평 7합은 1970. 12. 7. ***-* 대 81㎡(24평 4합)와 ***-*** 대

259㎡(78평 3합)으로 분할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6. 3. 28. 위 ***-* 대 81㎡는 ***-* 대 74㎡와 ***-*** 대 7㎡로, 위 ***-*** 대 259㎡는 ***-*** 대 248㎡와 ***-*** 대 11㎡로 다시 분할되었으며, 위 ***-*** 대 7㎡와 ***-*** 대 11㎡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1987. 11. 13.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 지번이 폐쇄되었다.

(3) 김○○는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인접토지인 ***-*의 지상 건물이 위 ***-* 대 74㎡ 중 70㎡를 침범한 것을 알고,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이○○에게 위 침범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고자 분할 · 합병 측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1988. 2. 12. 위 ***-* 대 74㎡가 ***-* 대 70㎡와 ***-*** 대 4㎡로 분할되었으며, 김○○는 1988. 3. 11. 위 ***-* 70㎡를 이○○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김○○ 소유로 남은 ***-*** 대 4㎡는 위 ***-*** 대 248㎡와 합병되어 ***-*** 대 252㎡가 되었다(이하 '피고소유 토지'라 한다).

(4) 피고소유 주택은 김○○가 매수한 후 여러 차례 개 · 보수를 거쳐 현재는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페니쉬 기와지붕 단층주택 1채와 이에 부속된 세멘블럭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1채의 현황을 가지고 있다.

(5) 피고소유 주택은 인접한 원고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5, 6, 11, 7, 8,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6㎡에 위 단층주택 중 일부가, 위 도면 표시 7, 11, 9, 13,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에 위 보일러실이 각 위치하고 있고(이하 위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주택 부분'이라 한다), 위 도면 표시 1, 12, 13, 9, 11,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2㎡는 화단으로, 위 도면 표시 10, 13, 12,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와 위 도면 표시 7, 10, 15, 16, 8,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는 피고소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 김○○는 피고소유 주택을 소유하면서 원고소유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1, 12, 14, 15, 16, 8,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및 선정자 김○○의 상속 및 점유관계

김○○는 피고소유 주택을 매수한 이래 줄곧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2004. 5. 4.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김○○, 김○○이 있었으나 김○○은 2004. 6. 28. 이

법원 2004느단***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4. 7. 9.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피고와 선정자 김○○가 김○○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2004. 9. 1. 피고소유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4.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김○○의 사망 이래 줄곧 피고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피고소유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정당한 점유·사용의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 원고에게, 피고와 선정자 김○○는 김○○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각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의 항변 및 반소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는 1967. 9. 6. 피고소유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후 주택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9. 6.에 이르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김○○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김○○가 1967. 9. 6. 신○○로부터 피고소유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소유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해 온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그 면적이 54㎡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다른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는 1988. 2. 12.경 분할·합병 전 피고소유 토지인 ***-* 대 74㎡ 중 70㎡가 인접토지인 ***-*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가 최초 매수한 분할·합병 전 피고소유 토지의 면적이 339.505㎡이고 위와 같이 침범당한 토지의 면적이 70㎡인 점, 또한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원고소유 토지의 지상건물의 외벽이 현실의 경계구실을 하고 있고 피고소유 주택의 이러한 부지 점유 현황은 매수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이와 동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록 원고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면적이 54㎡에 이른다 하더라도 김○○가 점유를 개시한 1967. 9. 6. 당시에는 이를 알 수 없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는 김○○가 점유를 개시한 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소유 토지 및 원고소유 토지의 각 분할측량과정에서 피고소유 주택이 원고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김○○는 1967. 9. 6. 이래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1987. 9. 6.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김○○가 2004. 5. 4. 사망한 후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소유 주택을 단독상속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87. 9. 6.경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원고가 99.4/225 지분, 이○○가 125.6/225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가 1988. 2. 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김○○가 시효취득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시효취득한 이후 그 중 이○○의 공유지분 125.6/225 지분은 공유물분할에 의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이○○의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시효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위 시효취득 당시의 원고의 지분인 99.4/225 지분에 관하여만 1987. 9.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 29368(반소) 판결 참조}.

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중 99.4/225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결국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125.6/225와 99.4/225 지분으로 공유할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관계에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민법 제265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피고주택 부분의 철거청구 및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인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그러한 관리방법의 하나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상의 피고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면, 김○○와 이를 승계한 피고가 공유물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김○○의 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 김○○는 김○○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중 원고 소유의 125.6/225 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 김○○에 대한 99.4/225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김○○가 99.4/225 지분을 시효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얻은 과실 기타의 이익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얻은 것으로 되어 이를 원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의 선정자 김○○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김○○의 임료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월 임료는 2000. 8. 1.부터 2000. 12. 31.까지 113,000원,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112,000원,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117,000원, 2003. 1. 1.부터 현재까지는 1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0. 8. 1.부터 2004. 4. 31.까지의 월

임료는 합계 5,473,000원(= 113,000 × 5개월 + 112,000 × 12개월 + 117,000 × 12개월 + 135,000 × 1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1,527,575원(= 5,473,000 × 원고 소유지분 125.6/225 × 상속지분 1/2)과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2004. 5. 4.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75,360원(= 135,000 × 125.6/2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김○○는 1,527,575원(= 5,473,000 × 125.6/225 × 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피고주택 부분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 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금원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및 선정자 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선정자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반소에 관하여 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선정자 김○○에 대한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나머지 항소, 선정자 김○○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윤정인 판사 김영민

신청자 목록

1. 김○○

인천 부평구

2. 김○○

서산시